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2025.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결산 개요	1
1. 결산 총괄	3
가. 세입	3
나. 세출	3
II . 주요내역	5
1. 세입	7
가. 총괄	7
나. 집행내역	8
(1) 수납액 내역	8
(2) 미수납액 내역	8
다. 집행실적 분석	9
2. 세출	10
가. 총괄	10
나. 집행내역	12
(1) 전용액	12
(2) 불용액	13
다. 집행실적 분석	14

3. 재무제표 분석	15
가. 총괄	15
나. 재무제표 분석	16

Ⅲ. 검토의견 17

1. 세출	19
가. 총괄개요	19
나. 현역병모집(1232-303):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필요	21
(1) 사업 개요	21
(2)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접근 편의성 제고 대책 마련 필요	22
다. 현역병입영(1232-305): 국외병역자원 관리 방식 개선 필요	28
(1) 사업 개요	28
(2) 국외병역자원 관리 사업 다각화 방안 모색 필요	29
라. 병력동원소집관리(1232-308): 전시업무교육 강화 필요	33
(1) 사업 개요	33
(2) 집합·대면 방식 전시업무교육 확대 및 합리적 자체평가 반영 기준 마련 필요	34
마. 사회복지요원 교육(1434-319): 사회복지요원 교육 과정 관리 강화 ·	38
(1) 사업 개요	38
(2) 사회복지요원 교육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임교수제 도입 검토 필요	39

바.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대체역 심사위 사무국 조직 재검토 필요 ..	44
(1) 사업 개요	44
(2)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개편 방안 검토 필요	45
사. 병무행정운영(7134-317):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집행 ..	51
(1) 사업 개요	51
(2) 예산 미반영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집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52
아.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원격강좌 지원 사업 확대 필요 등	56
(1) 사업 개요	56
(2)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 지원 확대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57

■ 참고자료 63

[참고자료 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65
[참고자료 2] 사회복지무연수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66
[참고자료 3] 사회복지무연수센터 2025년 사회복지무요원 교육 일정	67

I

결산 개요

1. 결산 총괄

- 병무청은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가. 세입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3억 3,600만원 보다 2억 1,500만원이 증가한 5억 5,1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 중 4억 4,400만원이 수납되고 1억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미수납액 1억 700만원은 징계부가금 5,900만원과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 4,800만원임.

[2024년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4년	336	551	444	-	107
2023년	300	534	487	-	48

나. 세출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4,118억 7,300만원으로, 이 중 3,908억 9,200만원(94.9%)을 집행하고 209억 8,100만원(5.1%)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4년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등	전용액 등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년	411,873	411,873	-	±730	411,873 (100%)	390,892 (94.9%)	-	20,981 (5.1%)

○ 세출예산현액 4,118억 7,300만원은 당초 예산과 같으며,

전용액은 종합상황실 설치 4억 2,000만원, 병역판정검사 여비 2억 7,900만원, 한시임기제 및 청년인턴 고용부담금 600만원이고, 사회복지무연수센터 공공요금 2,500만원은 내역변경임.

불용액은 인건비 4억 4,400만원, 기본경비 3억 3,600만원, 사업비 202억 100만원 등 총 209억 8,100만원임.

II

주요내역

1. 세입

가.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	불납 결손액 (D)	%	미수납액 (E=B-C-D)	%
				(C/B)		(D/B)		(E/B)
합 계	336	551	444	80.7	-	-	107	19.3
○ 토지대여료 (511)	1	2	2	100.0	-	-	-	-
○ 건물대여료 (512)	106	104	104	100.0	-	-	-	-
○ 기타관유물 대여료 (513)	25	29	29	100.0	-	-	-	-
○ 과태료 (563)	5	54	6	11.2	-	-	48	88.8
○ 징계부가금 (564)	-	61	2	3.8	-	-	59	96.2
○ 변상금 (571)	-	18	18	100.0	-	-	-	-
○ 위약금 (572)	2	0	0	100.0	-	-	-	-
○ 가산금 (581)	-	0	0	100.0	-	-	-	-
○ 기타경상 이전수입 (596)	82	127	127	100.0	-	-	-	-
○ 기타잡수입 (691)	3	2	2	100.0	-	-	-	-
○ 기타고정 자산매각대 (713)	112	155	155	100.0	-	-	-	-

* 자료 : 병무청

나. 집행내역

(1) 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 별	수납액	수납액내역
계	444	
○ 토지대여료	2	○ 청사부지 일부 임대 수입 : 2
○ 건물대여료	104	○ 구내식당(서울청, 충북청) : 27 ○ 병역판정검사장 나라사랑카드발급소 임대 등 : 77
○ 기타관유물 대여료	29	○ 서울청 구내식당 물품 대여료 : 1 ○ 주거용 임차숙소(본청, 경남청) 사용료 : 28
○ 과태료	6	○ 병역법 위반 과태료 징수 : 6
○ 징계부가금	2	○ 징계부가금 2건 : 2
○ 변상금	18	○ 병무행정 보안체계 고도화 사업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금액 : 18
○ 위약금	0	○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¹⁾ : 74천원
○ 가산금	0	○ 명예퇴직수당 환수분 납부지연 가산금 : 131천원
○ 기타정상이전 수입	127	○ 과오납 환수 등 : 17 ○ 정부구매카드 등 카드 적립금 : 9 ○ 명예퇴직수당 환수분(충북청) : 80 ○ 기타(여비 반납, 국고이자 등) : 21
○ 기타잡수입	2	○ 폐기문서 매각 대금 등 : 2
○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155	○ 의료장비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 155

* 자료 : 병무청

(2)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 별	미수납액	미수납액내역
계	107	
○ 과 태 료	48	○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2건)
○ 징계부가금	59	○ 징계부가금 : 59

* 자료 : 병무청

1)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매뉴얼 발간 물품계약(계약금액:1,977만원) 납품 지연(5일)에 따른 지체상금

다. 집행실적 분석

- 병무청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3억 3,6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5억 5,100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0.7%인 4억 4,400만원임.
-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주요 원인은 징계부가금 6,100만원, 명예퇴직수당 환수분 8,000만원,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보증인에게 부과한 체납 과태료 4,800만원 등이 추가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과태료 등이 추가 징수 결정된 것에 기인함.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19.3%로 나타나고 있는바, 미수납액은 징계부가금 5,900만원,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귀국 보증인에게 부과한 체납 과태료(2건) 4,800만원임.

2. 세출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예산변동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 년 이 월	전 용 등					
합계	411,873	-	730 △730	411,873	309,892	94.9	-	20,981
<병무행정(044)>	411,873	-	730 △730	411,873	309,892	94.9	-	20,981
□병역자원선발 (1100)	19,551	-	279 △279	19,551	18,496	94.6	-	1,055
병역판정검사 (1131-301)	19,551	-	279 △279	19,551	18,496	94.6	-	1,055
□병역자원충원 (1200)	5,418	-	-	5,418	5,239	96.7	-	179
현역병모집 (1232-303)	4,362	-	-	4,362	4,209	96.5	-	153
현역병입영 (1232-305)	378	-	-	378	373	98.8	-	5
병력동원소집관리 (1232-308)	678	-	-	678	657	96.9	-	21
□보충역복무지원 (1400)	8,217	-	25 △25	8,217	8,114	98.8	-	103
산업지원인력 (1434-309)	344	-	-	344	340	98.8	-	4
사회복무요원 교육 (1434-319)	5,751	-	25	5,776	5,767	99.8	-	9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434-320)	1,188	-	-	1,188	1,156	97.3	-	32
대체역 편입 및 소집 (1434-323)	934	-	△25	909	851	93.6	-	58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 예산	예산변동		예산 현액	집행액	%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 년 이 월	전 용 등					
□ 병무 행정 지원 (7100)	378,687	-	426 △426	378,687	359,043	94.8	-	19,644
인건비 (7111-100)	137,873	-	△6	137,867	137,423	99.7	-	444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7111-200)	3,333	-	6	3,339	3,200	95.8	-	139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7111-250)	6,855	-	-	6,855	6,658	97.1	-	197
병무 행정 안내 (7134-310)	1,890	-	-	1,890	1,854	98.1	-	36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7134-313)	5,227			5,227	5,208	99.6	-	19
병무 행정 운영 (7134-317)	8,820	-	420	9,240	8,648	93.6	-	592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7134-324)	4,336	-	-	4,336	4,133	95.3	-	203
병역의무자지원 (7135-314)	193,737	-	△420	193,317	175,675	90.9	-	17,642
사회복무요원운용 (7135-315)	6,137	-	-	6,137	5,914	96.4	-	223
시설 관리 (7136-441)	2,491	-	-	2,491	2,380	95.5	-	111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7137-325)	340	-	-	340	339	99.7	-	1
병무행정정보화(정보화) (7137-501)	7,648	-	-	7,648	7,611	99.5	-	37

* 자료 : 병무청

나. 집행내역

(1) 전용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730	
○ 병무행정운영	420	○ 지하 종합상황실 설치
○ 병역판정검사	279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면탈 단속 여비
○ 사회복지요원 교육	25	○ 사회복지연수센터 공공요금 (내역변경)
○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6	○ 한시임기제 및 청년인턴 고용부담금

* 자료 : 병무청

(2) 불용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별	예산현액	불용액	%	불용액 내역
계	411,873	20,981	5.1	집행잔액 20,981백만원
○ 병역판정검사	19,551	1,055	5.4	집행잔액 1,055백만원
○ 현역병모집	4,362	153	3.5	집행잔액 153백만원
○ 현역병입영	378	5	1.2	집행잔액 5백만원
○ 병력동원소집관리	678	21	3.1	집행잔액 21백만원
○ 산업지원인력	344	4	1.2	집행잔액 4백만원
○ 사회복지무요원 교육	5,751	9	0.2	집행잔액 9백만원
○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1,188	32	2.7	집행잔액 32백만원
○ 대체역 편입 및 소집	934	58	6.4	집행잔액 58백만원
○ 인건비	137,867	444	0.3	집행잔액 444백만원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3,339	139	4.2	집행잔액 139백만원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6,855	197	2.9	집행잔액 197백만원
○ 병무행정안내	1,890	36	1.9	집행잔액 36백만원
○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5,227	19	0.4	집행잔액 19백만원
○ 병무행정운영	9,240	592	6.4	집행잔액 592백만원
○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4,336	203	4.7	집행잔액 203백만원
○ 병역의무자지원	193,317	17,642	9.1	집행잔액 17,642백만원
○ 사회복지무요원운용	6,137	223	3.6	집행잔액 223백만원
○ 시설관리	2,491	111	4.5	집행잔액 111백만원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40	1	0.3	집행잔액 1백만원
○ 병무행정정보화	7,648	37	0.5	집행잔액 37백만원

* 자료 : 병무청

다. 집행실적 분석

- 2024년도 병무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118억 7,300만원으로, 이 중 3,908억 9,200만원(94.9%)을 집행하였음. 예산집행 과정에서 전용액 등은 7억 3,000만원, 불용액은 209억 8,100만원(5.1%)이 발생하였음.
-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액 등 7억 3,000만원의 내역은
 - 지하 종합상황실 4억 2,000만원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면탈 단속 여비 2억 7,900만원
 - 청년인턴 및 한시임기제 등 고용부담금 600만원
 - 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공요금 2,500만원임.
- 불용액 209억 8,100만원의 내역은
 - 병역자원 선발 10억 5,500만원
 - 병역자원 충원 1억 7,900만원
 - 보충역 복무지원 1억 300만원
 - 병무행정지원 196억 4,400만원임.

3. 재무제표 분석

- 병무청의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전반의 자산·부채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가. 총 괄

(단위: 백만원)

구분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A-B)	
				금액	비율
재 정 상태표	자 산	380,298	377,214	3,084	0.8 %
	부 채	176,323	53,694	122,629	228.4 %
	순 자 산	203,975	323,520	△119,545	△37.0 %
재 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9,658	28,650	1,008	3.5 %
	관리운영비	503,721	332,306	171,415	51.6 %
	비배분비용	-	-	-	-
	비배분수익	451	2,189	△1,738	△79.4 %
	재정운영순원가	532,929	358,767	174,162	48.5 %
순자산 변동표	기초순자산	323,520	357,640	△34,120	△9.5 %
	재정운영결과	532,929	358,767	174,162	48.5 %
	재원의조달및이전	413,540	324,907	88,633	27.3 %
	조정항목	△157	△260	103	39.6 %
	기말순자산	203,975	323,520	△119,545	△37.0 %

* 자료 : 병무청

나. 재무제표 분석

- 2024년 병무청 자산은 3,802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8,400만원 (0.8%)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763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6억 2,900만원(228.4%)이 증가하였음.

자산의 증가는 무형자산 10억 6,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6억 9,700만원, 투자자산 1,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유형자산 31억 4,200만원, 유동자산 17억 2,100만원이 증가함에 기인함.

부채의 증가는 유동부채 84억 2,7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9억 8,200만원 감소한 반면, 장기충당부채 1,330억 3,700만원이 증가함에 기인함.

- 2024년 재정운영결과는 5,329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1억 6,200만원(48.5%) 증가하였음. 이는 프로그램순원가(296억 5,800만원)에서 관리운영비(5,037억 2,100만원)와 비배분비용(0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4억 5,100만원)을 차감한 값임.

- 2024년 기말순자산은 2,039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95억 4,500만원(△37.0%) 감소하였음. 이는 기초순자산(3,235억 2,000만원)에서 당기 재정운영결과(5,329억 2,900만원)를 차감하고, 당기 재원의 조달 및 이전(4,135억 4,000만원)과 당기 조정항목(△1억 5,700만원)을 가산한 금액임.

III

검토의견

1. 세출

가. 총괄 개요

-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4,118억 7,300만원이며, 4개 프로그램 20개 세부사업에 3,908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209억 8,100만원을 불용함.

병무청의 예산 집행률은 94.9%, 불용률은 5.1%로서 최근 5개년간 불용률에 비하여 소폭 감소함.

- 병무청 예산은 일반회계 단일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상비 성격 예산의 비율(32.3%)이 일반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2024회계연도는 최근 5개년에 비해 그 집행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기 이전인 2019년 이전 병무청 예산 집행률(97.0%)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임.

- 이는 전체 불용률의 83.4%에 가까운 금액(174억 9,200만원)이 사회 복귀준비금 지원 사업 단일 항목에서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예산 편성시 가입률, 가입기간 등을 과도하게 추계한 결과라 할 수 있음.

[병무청 최근 10년간 세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집행율 (%)	95.9	95.9	95.7	97.0	95.3	90.2	90.0	88.8	92.3	94.9

- 병무청이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을 통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국외병역자원 관리 사업 다각화 모색 필요성, 사회복무요원 교육 과정 관리 강화, 대체역 심사 위원회 사무국 조직 합리화 필요성 등 일부 사업에는 보완이 필요함.

나. 현역병모집(1232-303)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필요

(1) 사업 개요

- 현역병모집 사업(1232-303)은 징집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각 군의 주요 군사특기를 개인의 자격·전공·면허 등 적성과 연계하여 선발하고, 군 복무가 개인의 취업·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영 전, 복무 중, 전역 후를 아우르는 병역진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43억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6.5%인 42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3.5%인 1억 5,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현역병모집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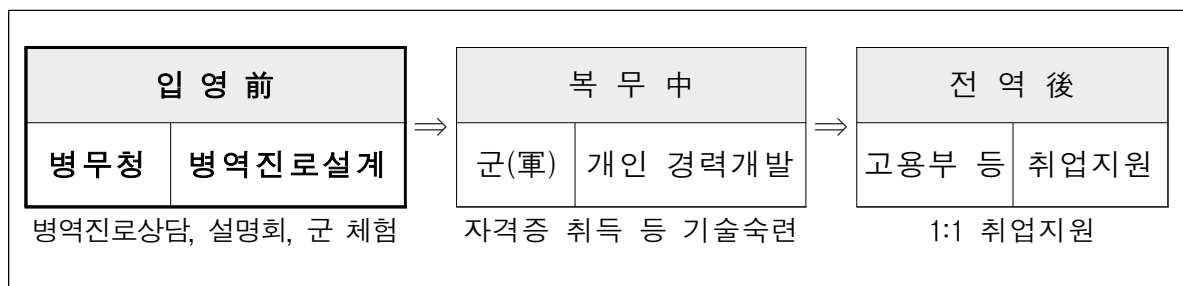
구 분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현역병모집	4,362	4,362	-	±60	4,362	4,209 (96.5%)	153 (3.5%)
- 현역병모집	544	544	-	-125	419	413 (98.6%)	6 (1.4%)
- 병역진로설계	3,818	3,818	-	+185 -60	3,943	3,796 (96.3%)	147 (3.7%)

(2)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접근 편의성 제고 대책 마련 필요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병역진로설계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센터 방문 여건을 개선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군 복무가 개인의 취업·진로와 연계되어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입영 전 직업선호도 검사²⁾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상담관이 병역진로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의 전공·경력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하고, 군 복무시 추천받은 군 특기 분야에서 개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역 후에는 군 경력을 바탕으로 복학·취업 등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체계도]



* 자료 : 병무청

2)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직업선호도 검사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및 학문분야 등을 측정하여 흥미유형 6가지(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에 적합한 직업정보를 제공함. 병무청은 2019년도 정책연구용역(‘진로·적성-군 특기 연결방안 등’)을 실시하여,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와 자격 등을 고려한 군 특기 연계 방안을 도출해 이를 병역진로설계 상담 시 활용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³⁾ 설치·운영과, 각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관할 내에 있는 대학교, 중·고등학교 등에 방문하여 병역진로상담 등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도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로 구성됨.
-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내에 수도권 관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총 11개소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⁴⁾ 결과 2024년 기준 서비스 만족도가 90.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병무청이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병역 의무 이행자 편의 증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보임.
- 특히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사업의 경우 과거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 전국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매년 10여회 가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비하여,
- 2024년부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된 이후 2024년 총 352회, 2025년 6월 말 기준 총 221회를 실시하여 그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음.

3) <참고자료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4) 만족도 조사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은 사람에게 설문조사 알림톡을 발송해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함.(2024년 기준 조사대상 32,605명, 응답인원 2,596명)

[센터별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실시 현황]

('25. 6. 30. 기준, 단위: 건)

센터명	2024년	2025년	합 계	센터명	2024년	2025년	합 계
서울	20	15	35	수원	37	16	53
대구	41	25	66	인천	15	6	21
광주	74	59	133	울산	13	7	20
대전	50	35	85	창원	22	9	31
부산	38	22	60	의정부	10	9	19
춘천	32	18	50	총 계	352	221	573

* 자료 : 병무청

- 하지만,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률⁵⁾ 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이용률이 25.01%에 그치고 있어 아직은 센터 이용률이 다소 미흡함.

5) 이용률 산출 산식 : 센터 이용자 ÷ 의무자 수(해당 연도 기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및 직업 계고 3학년 남학생 수 합산) × 100

[연도별 병역진로설계지원 센터 시설 이용률 현황]

('24. 12. 31. 기준, 단위: 명, %)

센터명	의무자수	2022년		2023년		2024년	
		이용자수	이용률	이용자수	이용률	이용자수	이용률
서울	40,841	8,424	20.6	8,624	21.1	8,352	20.5
대구	25,868	6,852	26.5	7,104	27.5	7,128	27.6
광주	31,622	7,379	23.3	6,522	20.6	10,386	32.8
대전	29,547	6,516	22.1	7,753	26.2	7,072	23.9
부산	15,312	2,122	13.9	7,124	46.5	6,383	41.7
춘천	7,544	994	13.2	4,308	57.1	4,540	60.2
수원	38,908			4,846	12.5	8,344	21.4
인천	28,131			2,453	8.7	6,845	24.3
울산	6,227					1,709	27.4
창원	16,812					2,257	13.4
의정부	18,059					1,750	9.7
합 계	258,871	32,287	21.4	48,734	22.4	64,766	25.0

* 자료 : 병무청

- 센터 이용률이 미흡한 원인 중에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병역판정
검사 등 주요 병무 행정·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는 각 지방병무청
(지청)과 지리적으로 분리·설치되어 있어 시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있다고 봄.

[지방청별 관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위치 현황]

(단위: km)

지방청명 (소재지)	지방청-센터간 이격거리	지방청명 (소재지)	지방청-센터간 이격거리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시 영등포구)	청내 위치	경인지방병무청 (경기 수원시)	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 동구)	1.5	인천병무지청 (인천 미추홀구)	8.9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 동구)	0.1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53(울산센터)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 중구)	1.7	경남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1.4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7.4(부산센터)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 의정부시)	0.6
강원지방병무청 (강원 춘천시)	2.2	평균 이격거리	7.2

* 지방청-센터간 이격거리 기준 : 네이버 지도 기준

* 자료 : 병무청

○ 따라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인 병역판정검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11개 지방청별 병역판정검사장과 해당 지방청 소속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간에 물리적, 행정 절차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병무 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역 의무자의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하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로 ‘찾아오게 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별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등 유관 교육기관 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에 대한 소요는 있으나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교육 기관과 이동 일정 계획을 협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접근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센터 방문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찾아오게 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가 구축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책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수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현역병입영(1232-305) : 국외병역자원 관리 방식 개선 필요

(1) 사업 개요

○ 현역병입영 사업(1232-305)은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소요를 적정 충원하여 군의 안정적 병력운영 지원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현역병입영),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발적 병역이행 분위기를 확산(국외자원관리)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3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98.8%인 3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1.2%인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현역병입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잔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현역병입영 사업	378	378	-	-	378	373 (98.8%)	5 (1.2%)
- 현역병입영	242	242	-	-	242	238 (98.1%)	5 (1.9%)
- 국외자원관리	136	136	-	-	136	136 (100.0%)	- (0.0%)

(2) 국외병역자원 관리 사업 다각화 방안 모색 필요

국외병역자원 관리 사업 수행 방식 다각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외 병역 자원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방개혁 2.0이 목표로 하는 상비 병력 50만명 규모⁶⁾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명 가량의 신규 병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추산⁷⁾됨.

그러나, 국내 병역 자원은 감소 추세에 있고 이는 추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외 병역 자원의 관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20세 병역자원 규모 변동 예상 추이]

(단위 : 만명)



* 자료 : 병무청(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 7) 국방중기계획(2023년~2027년)에 따라 현역병은 상비병력 50만명의 60%(30만명) 수준이고, 현역병이 1.5년(18개월) 복무하므로 이를 감안 시 연간 약 20만명 충원 필요(병무청 설명)

- 2024년 기준 현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 자원은 약 11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 중 약 3만명은 학업 수행, 단기 해외여행 등을 사유로 하는 국외 일시체류자이고, 약 8만명은 영주권자, 복수 국적자 등으로 해외 거주 목적 국외 이주자임.
- 2024년 말 기준 국외 병역 자원 규모는 국내 총 병역 의무 미이행자 (입영·소집 대상자) 규모 약 65만 7,000명의 약 16.6% 수준으로 적지 않은 병역 자원이 국외에 체류·거주하고 있음.

[연도별 국외 체류·거주 병역 자원 현황]

(단위 : 백명)

구분	계	국외일시체류자			국외이주자				
		소계	24세 이하	25세 이상	소계	24세 이하	25세 이상		
							영주권 등	부모 동거	복수 국적
2020년	1,166	220	186	34	946	209	564	100	73
2021년	1,140	211	179	32	929	209	533	108	80
2022년	1,149	271	227	44	878	188	493	110	87
2023년	1,143	305	265	40	838	170	460	112	96
2024년	1,093	292	254	38	801	154	429	114	104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은 2024년 국외 병역 자원 관리를 위하여 현역병입영 세부사업 (1232-305) 내에 국외자원관리 내역사업을 두고 예산 1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공관에 배포하는 병역 이행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책자 발간, 출국 시 병역 의무자에게

배부하는 안내문 제작 및 SNS 광고를 위한 일반수용비(1억 1,900만원)가 대부분(전체 예산액의 87%)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유사한 사업 내역 및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국외자원관리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금액	116	111	114	107	116	112	136	136
예산 내역	<2021년~2024년 주요 예산 편성 비목 내역> -국외병역자원관리 및 병역이행 정보제공 등 수용비 -국외이주자 중 국내 장기 체류 실태조사 등 국내여비							

* 자료 : 병무청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병역 이행 안내에 그치는 소극적인 사업 수행 방식으로는 국외 병역 자원 충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며, 실제로 국외 체류 병역 자원의 병역 의무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국외 체류·거주 병역 자원 병역 의무 이행 현황]

(2025.6.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외이주자 중 병역 의무 이행자	155	283	306	315	341	136

* 자료 : 병무청

○ 따라서 병무청은 국방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외 병역 자원이 병역을 이행할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외 국민 사회에 병역 이행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등 국외자원
 관리 사업 수행 방식의 다각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외 병역
 자원을 충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국가별 국외병역자원 분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브라질	기타
'20년	116,561	49,665	30,398	8,349	3,829	3,254	1,504	1,657	17,905
'21년	114,041	49,582	22,917	8,442	3,417	3,062	1,415	1,641	23,565
'22년	114,924	47,738	29,263	8,230	3,420	2,895	1,736	1,613	20,029
'23년	114,294	45,021	30,087	7,562	3,466	2,840	1,725	1,541	22,052
'24년	109,324	42,158	28,613	7,190	3,304	2,653	1,674	1,500	22,232

* 자료 : 병무청

라. 병력동원소집관리(1232-308) : 전시업무교육 강화 필요

(1) 사업 개요

- 병력동원소집관리 사업(1232-308)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 등을 예비군으로 편성하고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관리하며 병력동원(전시근로)훈련소집을 통한 동원절차 숙달 및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자의 병무행정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전시업무 병무담당 임명 및 전시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6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6.9%인 6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3.1%인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병력동원소집관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잔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병력동원소집관리	678	678		±8	678	657 (96.9%)	21 (3.1%)
- 병력동원(훈련)소집	456	456		+8	464	462 (99.6%)	2 (0.4%)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운영	222	222		-8	214	195 (91.1%)	19 (8.9%)

* 자료 : 병무청

(2) 집합·대면 방식 전시업무교육 확대 및 합리적 자체평가 반영 기준 마련 필요

집합·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시업무교육 비중을 확대할 방안과 전시업무교육 실적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시업무교육 점검 결과의 평가 반영 기준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병역법」⁸⁾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 등 전시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병력의 동원이 요구되는 동시에 인력부족, 통신마비 등으로 인한 행정력 약화가 예상되어 적기에 전시 상황 대응에 필요로 하는 병력을 동원하는 임무를 병무청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8)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2.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 또한, 「병역법」 9)은 지방자치단체 전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평시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 업무 담당자 현황]

(’25. 6. 30. 기준,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관 수	3,798	17	228	3,553
병무담당자	13,001	102	2,280	10,619

* 자료 : 병무청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꾸준히 교육 이수율이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전체 병무담당 직원이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되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약 절반에 해당하는 59% 가량의 직원만 집합·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되어, 각 지방병무청 별로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일정 협의 등을 통하여 집합·대면 방식 교육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⑥ 지방병무청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전시업무교육 집합·대면/비대면 교육 현황]

(단위 : 명)

교육연도	교육 대상자	계	교 육 실 적			
			비대면	%	집합·대면	%
2020년	6,500	6,282	6,282	100	-	-
2021년	12,812	9,409	8,598	91.4	811	8.6
2022년	12,876	9,645	7,239	75.1	2,406	24.9
2023년	12,881	11,015	7,379	67.0	3,636	33.0
2024년	12,998	13,236	5,344	40.4	7,892	59.6

* 자료 : 병무청

-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배움터를 통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전시업무 비대면(온라인) 강의는 주제별 4차시로 구분해 총 90분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집합·대면 교육은 병무청 소속 전시업무 담당 직원과 현직 지역방위 부대 군 간부(예: 동원계획장교 등)를 강사로 하여 총 180분 동안 강의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오프라인 교육을 매개로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 간에 정보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합·대면 교육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임.

- 또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을 집합·대면 교육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최근 「병역법」 제83조를 개정¹⁰⁾(2025. 7. 8. 시행)하여 ①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전시업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②지방자치단체장이 전시업무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를 병무청장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음.
- 따라서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법」 제83조 개정 취지에 맞게 전시업무교육 실적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합리적,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평가 방법, 항목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전시업무교육 점검 결과의 평가 반영 기준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음.

10)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사회복지요원 교육(1434-319): 사회복지요원 교육 과정 관리 강화

(1) 사업 개요

- 사회복지요원 교육(1434-319) 사업은 사회복지요원을 대상으로 복무 기본교육과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요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사회복지연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유류비, 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57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9.8%인 57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0.2%인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사회복지요원 교육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사회복지요원 교육	5,751	5,751	-	+122 -97	5,776	5,767 (99.8%)	9 (0.2%)

(2) 사회복지복무요원 교육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임교수제 도입 검토 필요

병무청은 사회복지복무연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복무요원 교육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와 장기적·체계적인 교육 과정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복무요원 교육 전임교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복무 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 및 기본 소양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5월 사회복지복무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병역법¹¹⁾에 마련함.

또한, 사회복지복무요원의 통일적·지속적인 교육 여건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 충청북도 보은군에 사회복지복무요원 통합 교육기관인 ‘사회복무연수센터’¹²⁾를 설치하여 전체 사회복지복무요원 기본교육 및 각종 복무지도교육¹³⁾을 실시하고 있음.

11)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자료2> 사회복지복무연수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13)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지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사회복지연수센터는 2024년 사회복지요원 복무기본교육으로 기본과정 27,320명(전체 인원을 36개 기수로 구분 실시), 디딤과정 418명(전체 인원을 5개 기수로 구분 실시) 총 27,73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¹⁴⁾

- 사회복지연수센터는 복무기본교육 과정과 함께 복무지도교육 과정도 운영 중인데 나래과정 563명(7개 기수로 구분 실시), 새롭 과정 425명(7개 기수로 구분 실시), 이음과정 47명 총 1,035명을 교육함.

【사회복지요원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구 분	과정명	기 간	교 육 대 상
복무 기본 교육	기본	4박5일	모든 사회복지요원
	디딤	2박3일	사회복지요원 대표, 10개월 이상 성실복무자, 미래설계·진로탐색 교육 희망자
복무 지도 교육	나래	2박3일	복무규정 위반자,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새롭	4박5일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 반복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복무지도교육 대상자 중 필요한 자
	이음	2박3일	현역복무부적합자 중 군 복무 적응 곤란자 중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

* 자료 : 병무청

14) <사회복지연수센터 교육 실적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38,830명	29,861명	30,733명	28,773명
복무기본교육	37,538명	28,919명	29,775명	27,738명
복무지도교육	1,292명	942명	958명	1,035명

- 사회복지무연수센터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육 과정별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이수 필요 과목 선정, 기본 교재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간 교육 일정 계획¹⁵⁾을 수립하고 있으며,
- 연간 교육 일정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 260여명 내외의 외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각 과목별로 강사의 전공 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연도별 교육과정별 투입 강사 인원 및 강사료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기본과정		디딤과정		나래과정	
	강사수	강사료	강사수	강사료	강사수	강사료
2022년	252	2,055,630	5	44,600	8	34,400
2023년	253	1,848,740	5	13,600	8	34,580
2024년	240	1,780,450	5	14,300	8	41,560

* 새롭·이음과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전문교육기관 소속 강사로 운영

* 자료 : 병무청

- 사회복지무연수센터가 채택하고 있는 외부 강사 인력풀 활용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전문적인 지식 전달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외부 인력 자원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는 용이하지 않음.

15) <참고자료3> 사회복지무연수센터 2025년 사회복지요원 교육 일정

- 사회복지연수센터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과정의 경우, 임무·규정 이해, 성실 복무 유도, 책임의식 함양 등 일반적·보편적인 교육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요원은 전국적인 단위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 예정임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요원이 복무 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소양에 대하여 매 교육과정마다 일관성과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

[기본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구성]

모 들	모듈1			모듈2						모듈3			모듈4
모듈명	정체성 인식			건강한 복무생활						성실한 복무생활			미래 설계
과목명	임무 이해	규율 규정 이해와 활용	우리의 자긍심	인권 이해와 실천	사회재난과 응급처치	개인정보보호와 실천	4대 폭력 예방	4대 중독 예방	생명존중 / 마음검사	협력하는 복무생활	복무생활의 의미 발견	슬기로운 복무생활	취·창업 / 금융

* 자료 : 병무청

- 현재 사회복지요원 교육 과정을 외부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식만으로는 매년 대규모로 실시되는 사회복지요원 교육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와 교육 과정의 장기적·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임교수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병무청 사회복지연수센터와 교육 대상에서 차이는 있으나,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공공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교육 프로그램을 외부 강사 인력풀 활용 방식과 전임교수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타 교육기관 전임강사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우정인재 개발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관세인재 개발원	감사 교육원
전임강사	6	12	23	8	3
연간 교육인원	136,865	9,000	8,000	4,300	9,611

* 자료 : 병무청

- 따라서 병무청은 사회복지연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 교육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체계적인 교육 과정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요원 교육 전임교수 제도를 도입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대체역 심사위 사무국 조직 재검토 필요

(1) 사업 개요

-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사업은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9억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3.6%인 8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6.4%인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잔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대체역 편입 및 소집	934	934	-	△25	909	851 (93.6%)	58 (6.4%)

* 자료 : 병무청

(2)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개편 방안 검토 필요

대체역 편입 신청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체역심사위원회 행정 업무 소요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여 사무국 조직 구성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사업(1434-323)은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보충역,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 헌법재판소가 (舊)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¹⁶⁾ (2018.6.28.)을 함에 따라 대체복무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020년 1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20. 1. 1. 시행)됨.

대체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2020.6.30.)한 이후로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878명이 대체역으로 복무를 완료하였고 1,688명이 소집되어 복무 중인 것으로 파악됨.¹⁷⁾

16)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 「병역법」 제5조제1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판시함.(2011헌바379, 2018.6.28.)

17) <대체역 소집해제자(복무완료) 현황>

(‘25. 6. 30. 기준,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인 원(명)	-	1	2	105	531	239	878

[법무부 교정시설 별 대체역 복무 인원 현황]

('25. 6. 30. 기준, 단위: 명)

계	서울	인천	서울 남부구	화성 직훈	의정 부	여주	서울 남부교	춘천	원주	영월	경북 제1	부산	포항	진주	대구	안동
1,688	94	60	75	72	42	69	66	42	47	52	41	42	45	47	42	44
	경북 제2	김천 소년	울산	통영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충주	광주	전주	순천	목포	군산	제주	교육 센터
	35	40	35	34	92	50	80	43	40	72	40	66	51	58	28	44

* 자료 : 병무청

-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절차를 살펴보면 대체역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대체역심사위원회에 편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사실조사관이 신청인·참고인 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심사위원회에 보고함.

사전심사위원회는 신청인 진술 청취 등 사전심사¹⁸⁾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원위원회 전체회의¹⁹⁾에서 최종 심사 의결을 하여 대체역 편입 신청인에게 편입 여부에 대한 결정서를 송부함.

- 통상 편입 신청 접수부터 결정서 송부까지 3개월이 소요되며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소집 후 법무부 소속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배치되어 합숙근무 형태로 교정시설 관리, 교정·교화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며 복무기간은 36개월임.

18) 사전회의 : 5~6명의 대체역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 소속 조사관의 사실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에 대한 대면 질의 등 실질적인 심사 진행(의결권 없음)

19) 전체회의 : 대체역 심사위원 전원(13명)으로 구성되며, 사전회의 결과를 토대로 심의 후 대체역 편입 최종 결정(의결권 있음)

[대체역 편입 심사 절차 개요]

접수 및 배정	사실조사	심사·의결	심사 종료
1.편입신청 접수 • 신청요건 확인 • 장·소집 연기처리	3.조사 준비 • 구비서류 보완 • 사실조사 계획 수립	5.사전심사 위원회 • 사실조사 결과보고 • 신청인 진술청취 • 사전심사 결과등록	7.심사결과 통보 • 결정서 송부
대체역법제3조	대체역법제11조~제12조	대체역법제11조~제12조	7-1.(인용) 대체역 편입 • 대체복무요원 소집
2.조사관배정 • 담당조사관 배정	4.조사 실시 • 현장·온라인 조사 • 신청인·참고인 조사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전원 위원회 • 사전심사 결과보고 • 신청인 진술청취 • 최종 심사·의결	7-1.(기각·각하) 장·소집 • 장·소집 연기 해소 • 의무 부과 • 행정심판·소송(불복 시)
대체역법제11조~제12조	대체역법제11조~제12조	대체역법제13조~제14조	대체역법제13조

* 자료 : 병무청

○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2020년 6월에 설치된 병무청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²⁰⁾되어 있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행정 지원 조직인 사무국²¹⁾(정원 : 31명, 현원 : 30명)을 두고 있음.

○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최초 2020년 6월 설치될 당시 연간 약 1,000건의 대체역 편입 심사를 예상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4개조로 구성·운영

20)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의2(구성)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의4(사무국)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29인의 위원으로 구성²²⁾하였으나, 실제 위원회 운영 상황(사전심사 위원회를 2개조로 운영)과 지속적인 대체역 편입 신청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6.30. 시행)을 통하여 대체역심사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으로 축소할 바 있음.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 및 대체역심사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025. 6. 30. 기준,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종교적 신념	1,951	565	445	361	333	123	3,778
	비종교적 신념	11	9	8	7	5	3	43
편입 신청 건수		1,962	574	453	368	338	126	3,821
사전 회의	개최건수	30	144	112	72	58	29	445
	심사건수	180	1,089	574	457	344	175	2,819
전원 회의	개최건수	6	33	25	23	22	12	121
	심사건수	731	1,297	656	468	348	161	3,661

* 자료 : 병무청

- 그런데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 수는 그 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위원회 지원 기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은 2020년 사무국 설치 이후 약간의 조직 구성의 변경만 있었을 뿐, 전체 정원 규모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2) 국회 국방위원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 검토보고서(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2118206호) 8면 참조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변경 현황]

구 분	조직 구성	정원	현원
2020.6.30. (위원회 출범 시)	1국 3과 (심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33명	30명
2022. 12.31.	1국 2과 (심사기획과, 심사운영과)	31명	31명
2025.6.30. (현 재)	1국 2과 (심사기획과, 심사운영과)	31명	30명

* 자료 : 병무청

-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의 주요 임무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대체역 편입 심사·의결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한 사실조사, 행정지원 업무임을 고려할 때, 대체역 편입 신청 감소로 위원회 회의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이에 부수한 사무국의 대체역 편입심사 요건 검토, 사실조사 업무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음.

[대체역 사실조사관 조사업무 실적 현황]

(2025. 6. 30. 기준,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실조사 건수	180	1,089	574	457	344	175
조사관 수	18	18	18	16	16	16
1인당 사실조사 건수	10.0	60.5	31.9	28.6	21.5	10.9

* 자료 : 병무청

- 따라서 병무청은 사무국 조직 구성 및 규모를 감소하는 행정 소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무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5년 7월 현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²³⁾에 따라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에 대하여 정원 규모의 적정성 등 조직 평가 업무를 진행 중임.

2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4. 그 밖에 신설되는 하부조직 또는 증원되는 정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사. 병무행정운영(7134-317):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집행

(1) 사업 개요

- 병무행정운영 사업(7134-317)은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등과 같은 병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9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3.6%인 86억 4,800만원을 집행하여 6.4%인 5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음.

[병무행정운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병무행정운영	8,820	-	+440 -20	9,240	8,648 (93.6%)	592 (6.4%)

* 자료 : 병무청

(2) 예산 미반영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집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병무청은 지하상황실 구축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벗어난 전용을 통해 사업을 집행한 바, 향후 이러한 사업 추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병무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대전 정부종합청사(지하 1층) 내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지하상황실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 전용 승인을 요청(2024.7.23.)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병무청의 승인 요청을 받아들여 예산 전용 승인을 통보(2024.7.24.)함.²⁴⁾
- 병무의무자지원 세부사업(7135-314)에서 기타보전금(310-04) 4억 2,000만원을 전용 재원으로 하여, 병무행정운영 세부사업(7134-317) 중 자산취득비(430-01)에 2억 8,000만원, 공사비(420-03)에 1억 4,000만원을 각각 전용함.

[병무청 지하상황실 구축을 위한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전용재원)	예산액(감액)	예산과목(부족재원)	예산액(증액)
병역의무자지원- 기타보전금	420,161	계	420,161
		병무행정운영-공사비	140,411
		병무행정운영-자산취득비	279,750

24) 지하상황실 구축 관련 양 기관 간 예산 전용 실무 협의는 2024년 6월경부터 시작함.

○ 병무청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이 중앙행정기관 비상대피시설(상황실, 대피시설) 점검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2023.8.14.)하였고, 뒤이어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비상대피시설 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에 보고(2024.1.9.)함.

이후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비상대피시설 구축을 위한 추진 사항을 담은 공문(제목: ‘중앙행정기관 비상대피시설 구축 관련 추진사항 통보’, 비상안전기획관-140, 2024.1.12.)을 발송하여 비상대피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병무청에 예산 전용에 대한 협조 조치를 재정 당국에 취하도록 요청함.

○ 병무청은 기획재정부 승인에 따른 예산 전용 후 2024년 10월 초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약 2개월 간의 시설공사, 실내공사 후 2024년 11월 말 지하상황실 구축을 완료함.

[병무청 지하상황실 공사일정 및 공사비용]

구 분	공사일정	집행내역
계	-	127,207천원
실 내 공 사	2024.10. 7. ~ 11. 4.	48,866천원
전 기 공 사	2024.10. 7. ~ 11. 4.	32,510천원
통 신 공 사	2024.10. 7. ~ 11. 4.	19,860천원
소 방 공 사	2024.10. 7. ~ 11. 4.	8,250천원
국가지도통신 이전공사	2024.11.4 ~ 11.30.	17,721천원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의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은 국회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심의·확정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편성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한 사업 집행으로 판단됨.

○ 병무청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²⁵⁾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은 기획재정부 승인을 얻어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도 사업간 유사성, 재원 사용의 시급성, 기관운영 필수 경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은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지가 있음.

- 주로 사회복지요원의 사회복지준비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담고 있는 병역의무자지원 사업과 병무행정운영 사업간 사업의 유사성은 거의 없으며,
- 재원 사용의 시급성 또한 지하상황실 구축 기간이 단시간 소요 (약 2개월)된 것으로 보아 재정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예산안 편성 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2025년 연초에 사업을 수행 하여도 무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25)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병무청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맞지 않게 사업을 집행한 바, 향후 이러한 사업
추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아.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원격강좌 지원 사업 확대 필요 등

(1) 사업 개요

-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7135-314)은 병역의무자가 징·소집 등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및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등을 지원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해지한 사회복지요원에게 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1,933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0.9%인 1,756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9.1%인 176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음.

[병역의무자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추경	잔년도 이월액	아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병역의무자 지원	193,737	193,737	-	△420	193,317	175,675 (90.9%)	17,642 (9.1%)
- 원격강좌 수강료	261	261	-	213	474	474 (100%)	-
- 원격강좌 수수료	29	29	-	11	40	40 (100%)	-
- 의무자여비 등	193,447	193,447	-	△644	192,803	175,161 (90.8%)	17,642 (9.2%)

(2)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 지원 확대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회복지요원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례적으로 사업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병역법」 제73조²⁶⁾에 따르면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회복지요원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병무청은 2020년부터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원격강좌 수강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이듬해 2021년부터 수수료 지원에 더하여 원격강좌 수강료 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²⁷⁾

26)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 원격 강좌 수수료(건당 11,000원)는 2020년부터 100% 지원하고 있으며, 원격 강좌 수강료는 '21년부터 수강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22년부터는 80% 지원으로 확대하였음.

- 원격강좌 수강 신청은 군인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가능하고, 지원 범위는 학기당 6학점 이내(연 최대 12학점 이내)이며, 원격강좌 수강 신청이 가능한 대학교는 2020년 160개교에서 2024년에는 184개교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사회복지요원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1,585명 지원에서 2024년 2,650명을 지원하여 4년간 지원자 수 기준으로 총 1,065명이 증가(2020년 기준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사회복지요원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 실적 현황]

(매년 12. 31.기준 / 단위: 명, 건, %)

구 분	복무인원	지원실적		
		지원인원(명)	지원비율(%)	지원건수(건)
2020년	56,306	1,585	2.8	1,953
2021년	57,769	1,941	3.4	2,495
2022년	53,214	2,070	3.9	2,710
2023년	49,130	2,188	4.5	2,904
2024년	45,213	2,650	5.9	3,668

* 자료 : 병무청

○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요원 45,349명 중 대학생은 35,528명²⁸⁾으로 약 78.3%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요원이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 대상인데 비하여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실적은 전체 사회복지요원의 5.9% 수준(대학생 대비 7.4%)에 그치고 있음.

28) 2025년 5월말 기준 사회복지요원 복무 인원 학력별 현황(출처 : 병무청 자체 통계)

○ 이 실적으로는 병역 의무 이행 중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기 개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은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방부도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원격 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총 복무 인원 약 299,000명 중 24,464명을 지원(지원율 8.2%)하였는 바²⁹⁾, 동일한 수업료 지원 사업 수행 결과 병사에 대한 지원율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율 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병사 원격 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 실적 현황]

(매년 12. 31.기준 / 단위: 명, 건, %)

구 분	복무인원	지원실적		
		지원인원(명)	지원비율(%)	지원건수(건)
2020년	35.6만명	19,160	5.4	21,595
2021년	32.9만명	17,827	5.4	19,452
2022년	29.9만명	17,535	5.9	21,191
2023년	29.9만명	19,792	6.6	24,478
2024년	29.9만명	24,464	8.2	31,035

* 자료 : 국방부

29) 2024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인원 185,866명 중 155,102명이 대학생으로 현역병의 대학생 비율은 약 83.4%로 추산됨.

○ 한편, 병무청은 2024회계연도에 원격 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강료 2억 6,100만원, 수수료 2,900만원을 예산 편성 하였고, 수강료 4억 7,435만원(예산 대비 181.7% 집행), 수수료 4,034만원(예산 대비 139.1% 집행)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됨.

이는 편성된 예산 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예산 초과 집행은 2024회계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병무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등에 따라 별도의 예산 변경 절차 없이 동일한 내역사업 중 재원의 여유가 있는 다른 내내역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였다고 설명함.

[원격 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강 료			수 수 료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1년	73	165	225.9%	13	27	211.1%
2022년	261	318	121.8%	29	30	102.8%
2023년	261	363	139.1%	29	32	110.2%
2024년	261	474	181.7%	29	40	139.1%

- 그러나, 연례적으로 국회에서 정한 예산 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관행으로 판단되므로,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 인력 현황

(’24.12.31. 기준정원, 단위 : 명)

구분	’20년 개소	’21년 개소			’22년 개소		’23년 개소		’24년 개소			계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춘천	수원	인천	울산	창원	의정부	
계(명)	8	7	7	7	6	4	6	5	5	5	5	65
일반직	8	4	4	4	3	3	4	4	3	3	3	43
공무직	-	3	3	3	3	1	2	1	2	2	2	22

○ 센터별 업무에 따른 인원 배치 현황

총계	센터 총괄	계획, 서무 등	전문상담관*(취업맞춤특기병)
5~7명	1명	1명	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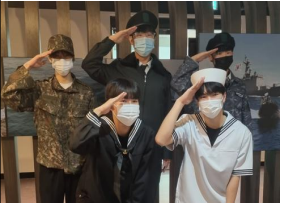
* 지방청별 상담수요(병역자원)에 따라 상담관 운영에 차이가 있음(3~4명)

○ 시설 현황

- 구 성

병역진로정보실	병역진로상담실	전시·체험관
		

-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현장 모습

① 직업선호도검사	② 설명회	③ 병역진로상담	
			
④ 군보급품 전시·체험		⑤ 군 장비 모의체험	
			
			

[참고자료 2] 사회복지연수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공무원						공무직						
		소계	행정	통신	간호	임기제		소계	방호	시설	미화	응급구조사	생활지도관	복무지도관
						기획과장	생활운영관							
계	81	39	30	1	1	1	6	42	11	12	13	3	2	1
센터장	1	1	1											
운영지원과	44	8	7	1				36	11	12	13			
연수기획과	8	8	7			1								
연수운영과	28	22	15		1		6	6				3	2	1

○ 시설 현황



[참고자료 3] 사회복지연수센터 2025년 사회복지요원 교육 일정

○ 교육 기간

△ 연 52주 중 40주간 교육

- '25. 2. 3. 부터 교육 시작

- 연 12주 교육제외: 교육준비·혹서기(10주), 공휴일포함 주(2주)

△ 5주는 디딤교육 및 복무지도교육(2박3일)만 실시

- 연 11주는 복무기본교육과 복무지도·디딤과정 중복 운영

연간	교육 실시			교육 미실시		
	교육 주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복무지도/ 디딤과정	소계	공휴일 포함	교육준비 /혹서기
52주	40주	35주	16주	12주	2주	10주
	※ 중복 운영: 11주					

○ 주간 교육 일정

주	일자	기간	교육과정	제외사유 등
1~5주	1. 1. ~ 1. 30.	-	-	교육 준비
6주	2. 3. ~ 2. 7.	4박5일	복무기본(기본)	
7주	2.10. ~ 2.14.	4박5일	복무기본(기본)	
8주	2.17. ~ 2.21.	4박5일	복무기본(기본)	
9주	2.24. ~ 2.28.	4박5일	복무기본(기본)	
10주	3. 3. ~ 3. 7.	2박3일	복무기본(디딤)+복무지도(나래/이음)	
11주	3.10. ~ 3.14.	4박5일	복무기본(기본)	
12주	3.17. ~ 3.21.	4박5일	복무기본(기본)+복무지도(새롬)	
13주	3.24. ~ 3.28.	4박5일	복무기본(기본)	
14주	3.31. ~ 4. 4.	4박5일	복무기본(기본)	
15주	4. 7. ~ 4.11.	4박5일/2박3일	복무기본(기본/디딤)+복무지도(나래)	
16주	4.14. ~ 4.18.	4박5일	복무기본(기본)+복무지도(새롬)	
17주	4.21. ~ 4.25.	-	-	교육준비 및 정비
18주	4.28. ~ 5. 2.	4박5일	복무기본(기본)	
19주	5. 5. ~ 5. 9.	2박3일	복무기본(디딤)+복무지도(나래/이음)	
20주	5.12. ~ 5.16.	4박5일	복무기본(기본)	
21주	5.19. ~ 5.23.	4박5일	복무기본(기본)	
22주	5.26. ~ 5.30.	4박5일	복무기본(기본)+복무지도(새롬)	

주	일자	기간	교 육 과 정	제외사유 등
23주	6. 2. ~ 6. 6.	2박3일	복무기본(디딤)+복무지도(나래)	
24주	6. 9. ~ 6.13.	4박5일	복무기본(기본)	
25주	6.16. ~ 6.20.	4박5일	복무기본(기본)	
26주	6.23. ~ 6.27.	-	-	교육준비 및 정비
27주	6.30. ~ 7. 4.	4박5일	복무기본(기본)	
28주	7. 7. ~ 7.11.	4박5일	복무기본(기본)+복무지도(새롬)	
29주	7.14. ~ 7.18.	2박3일	복무기본(디딤)+복무지도(나래/이음)	
30주	7.21. ~ 7.25.	4박5일	복무기본(기본)	
31주	7.28. ~ 8. 1.	-	-	혹서기
32주	8. 4. ~ 8. 8.	4박5일	복무기본(기본)	
33주	8.11. ~ 8.15.	2박3일	복무기본(디딤)+복무지도(나래/이음)	
34주	8.18. ~ 8.22.	4박5일	복무기본(기본)+복무지도(새롬)	
35주	8.25. ~ 8.29.	4박5일	복무기본(기본)	
36주	9. 1. ~ 9. 5.	4박5일	복무기본(기본)	
37주	9. 8. ~ 9.12.	4박5일/2박3일	복무기본(기본/디딤)+복무지도(나래)	
38주	9.15. ~ 9.19.	4박5일	복무기본(기본)	
39주	9.22. ~ 9.26.	4박5일	복무기본(기본)	
40주	9.29. ~ 10. 3.	-	-	개천절(10. 3.)
41주	10. 6. ~ 10.10.	-	-	추석, 한글날(10.6.~9.)
42주	10.13. ~ 10.17.	4박5일/2박3일	복무기본(기본/디딤)+복무지도(나래/새롬)	
43주	10.20. ~ 10.24.	4박5일	복무기본(기본)	
44주	10.27. ~ 10.31.	4박5일	복무기본(기본)	
45주	11. 3. ~ 11. 7.	4박5일/2박3일	복무기본(기본/디딤)+복무지도(나래/이음)	
46주	11.10. ~ 11.14.	-	-	교육준비 및 정비
47주	11.17. ~ 11.21.	4박5일	복무기본(기본)+복무지도(새롬)	
48주	11.24. ~ 11.28.	4박5일	복무기본(기본)	
49주	12. 1. ~ 12. 5.	4박5일/2박3일	복무기본(기본/디딤)+복무지도(나래)	
50주	12. 8. ~ 12.12.	4박5일	복무기본(기본)	
51주	12.15. ~ 12.19.	4박5일	복무기본(기본)	
52주	12.22. ~ 12.26.	-	-	다음해 교육준비

* 내부사정, 감염병 상황 등 특별한 경우 교육실시 주 변동될 수 있음.